

2026년 제1회 창원보호관찰소
일반직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창원보호관찰소장

1 임용예정인원 (운전서기보,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9급)	1명	정년 적용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856, 제일빌딩 4층)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직	운전서기보(9급)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 보호관찰 등 집행보조 및 행정지원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 수습 업무 처리 지침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응시 연령
 -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2. 26.)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직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증은 당해시험의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전체 경력'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6.) 기준]

우대요건	○ 운전 분야 근무 경력(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2019. 1. 1. 이후 운전경력으로 1년 이상 경력에 대해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 - 군 운전경력의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군경력,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도 불인정 ※ '우대요건 고려사항' 및 [표 1]운전분야 근무 경력 필수 사항 확인 ○ 운전 경력 '전체 기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군 운전경력도 해당)에 따라 차등 배점(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횡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자격증 기본사항 및 범위 - '자격증'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운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표 2]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인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표 3]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인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우대사항요건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경력 관련

- 자격요건 충족(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1년 이상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 '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군 경력의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2019. 1. 1.부터 수송병과(운전병)로 인원 수송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의 근무경력, 승용차, 특수차량 등 경력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표 1] 운전분야 근무 경력 필수 사항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하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실제 근무기간(년.월.일),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여부, 운행차종, 승차인원이 모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이 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증빙서류는 최근(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거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운전 분야 근무 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근무기간이 긴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표 2]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함.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표 3]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함.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1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10명)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잠재역량 · 발전가능성 · 직무이해도(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운전분야(1종 대형면허 소지 후 36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 근무경력자
- 군 운전경력(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후 36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 포함
※ 2019. 1. 1. 이후의 운전 경력 해당
- 운전경력 '전체기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위원이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 (불합격 기준)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2인 이상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추가 합격자 결정**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19.(월) ~ 1.29.(목)	'26.1.30.(금) ~ 2.6.(금)	'26.2.13.(금)	'26.2.26.(목)	'26.3.16.(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세부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 일시 : 2026. 1. 30.(금) ~ 2. 6.(금) 09:00 ~ 18:00
 - － 평일 근무 시간 내에만 가능
 - ※ 점심시간(12:00~13:00)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등기우편 및 방문(대리접수 가능)
 - － 접수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32, 행정지원과 채용 담당자
(우)51439 연락처 055)213-8902
 - － 등기우편 접수 시 겹봉투에 “일반직 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함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폰 SMS로 통보
 -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 제출 서류 미비(예: 서명 누락, 수입인지 미부착, 출력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필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필수)	별지서식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필수)	별지서식 제9호
	공정채용확인서(필수)	별지서식 제10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필수)	별지서식 제11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필수)	병역사항 포함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필수)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운전경력 증명서 1부(필수)	경찰서 발행, 인터넷 발급 가능
	운전 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원본 1부	별지서식 제12호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 철회
 - － 응시 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이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서식 제13호]”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지서식 제14호]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3. 16. ~ 3. 18.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근무시간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3. 30.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적용

9 안내 및 참고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직	운전서기보(9급)	1명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주요 업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 공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공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 보호관찰 등 집행보조 및 행정지원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유연한 사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차량소모품에 관리 주기 및 차량 유지관리 관련 지식 ○ 유사시 차량 응급조치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보호관찰·소년보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식 ○ 보호관찰·소년보호제도 관련 제반 법령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운전		
	자격증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 2019. 1. 1. 이후 운전분야 근무경력(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이후 운전 경력 '전체기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2.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구입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전자정부수입인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증빙자료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일자 및 기간을 동일하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원본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9.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10. 공정채용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12.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군복무 확인서) 1부 추가 제출
1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1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 채용 공고일(시작일 2026. 1. 19.)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인터넷 발급(민원24) 증명서는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진본 확인)가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15. 운전 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원본 1부(별지서식 제12호) : 해당자에 한함	○ 운전 분야 경력(군 운전경력 포함)은 2019. 1. 1. 이후 운전경력으로 1년 이상 경력에 대해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에 한함 (군 운전경력의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 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군경력)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및 전담 여부,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기준 근무시간, 운행차량 종류 및 승차인원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 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가급적 공고문에 제시된 경력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16.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17.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공통사항

-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증빙자료) 중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자료도 제출 가능
-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국문 번역된 요약본을 함께 첨부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원서

창원보호관찰소장 귀하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9급)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비 해당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또는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9급)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서명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운전서기보(9급)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A4용지)일 경우는 첨부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예) 운전분야 경력 요건 중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 취득 후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2010년부터 운전 경력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있을 시, 2019. 1. 1. 이후 경력이 우대요건에 해당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명시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하나 본인 원할 시 기재는 가능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9급)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직위와 관련있는 경력·실적·채용예정분야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함

- 글자크기 15,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작성자 확인란은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이메일, 주소,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공무원 채용 관리	결격사유·범죄 유무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창원보호관찰소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창원보호관찰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조회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의 운전서기보 채용 응시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창원중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부서 및 직위(급)	담당업무 내용 및 전담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전임 또는 비전임 (주당 소정 근로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예) 차종(인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① <table><tr><td colspan="2">발 급 자</td></tr><tr><td>소 속</td><td></td></tr><tr><td>직 위</td><td></td></tr><tr><td>성 명</td><td>①</td></tr></table>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①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①												
○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u>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u> ○ <u>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만큼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함</u>													

<별지서식 제14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창원보호관찰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